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10.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3.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김장관 의원 등 5명(도하석,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 발의일자: 2025. 10. 2.
- 회부일자: 2025. 10. 10.
- 검토기간: 2025. 10. 10. ~ 10. 16.

2. 제안이유

- 법령상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언을 정비하고 행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 확보 및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대상 및 위임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의 승인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제명 변경 및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28조제5항제3호, 제38조 제1항제5호)
- 장애인 관련 용어 등 문언을 정비함(안 제56조, 별표 제4호)

4. 참고사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정부조직법」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0. 10. ~ 10. 21.):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의 반영 및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반영된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대상을 재산관리관으로 반영하고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 승인 주체를 ‘구청장’에서 공유재산 업무 총괄책임자인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업무의 적정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함.
 - 안 제28조와 안 제38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 변경과 행정부의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6조와 안 별표는 중복의미의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용어를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정확성과 행정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재산인 달서구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산소재지 소속행정기관장(산하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별표 제4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u>재산소재지 소속행정기관장(산하행정기관을 포함한다)</u>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u>구청장</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2. (생략)</p> <p>3.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 ----- -----<u>재산관리관</u>----- ----- -----.</p> <p>② ----- ----- ----- -----<u>총괄재산관리관</u>----- -----.</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 ----- -----</p>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

1. ~ 3. (생략)
4. 보건소

구분	실명	면적기준	
		군보건소	통합시 보건소
진료 활동	a	(생략)	
		장애자용 화장실	4.86
(생략)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

1. ~ 3. (생략)
4. 보건소

구분	실명	면적기준	
		군보건소	통합시 보건소
진료 활동	a	(현행과 같음)	
		장애인용 -----	---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명 변경)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8. (생략)

9. 국가보훈부

10. ~ 19. (생략)

② ~ ③ (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 ④ (생략)